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나523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주은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3. 1. 20.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17. 선고 2020가단11202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6. 6. 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6. 6. 9. 접수 제170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7 내지 9행 중 “입증책임”을 “증명책임”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 “살피건대” 다음에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황지현, 판사 박승휘

별지

부동산 목록

1. 부산 서구 I 대 69㎡ 중 52/897 지분
2. 부산 서구 I, J
[도로명주소] 부산 서구 K
블록조스레트지붕단층주택 36.0㎡
중 2/13 지분
3. 부산 서구 J 대 34㎡ 중 2/13 지분. 끝.

